



제41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취업제한 장애인관련기관에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이동지원센터 등 추가〉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1313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1.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1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7. 2.
- (3) 회 부 일 : 2024. 7. 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정한 인원·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가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이들 기관에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근무가 가능함.

이에 개정안은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학대범죄 및 성범죄로부터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장애인관련기관에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illegible]

현행	개정안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10. (생략) <u><신설></u> <u><신설></u> ② ~ ⑬ (생략)	----- ----- ----- ----- -----. -----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 1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2항의 이동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3항의 광역이동지원센터 ② ~ ⑬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¹⁾

□ 이는 자기 보호 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
관련기관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혹은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근무
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장애인학대 행위자의 범죄로부터 장애인
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2012년부터 도입되었음.

- 현재 취업제한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장
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임.

< 취업제한 장애인관련기관 현황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제1항 각호

1. 제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제59조의11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5.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6.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 같은 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같은 법 제32조의 장애영
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활동지원기관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조 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특수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 1)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
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
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이하 각 호 생략)

□ 개정안은 취업을 제한하는 장애인관련기관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²⁾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³⁾를 명시하여,

장애인이 근무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관련기관에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혹은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근무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입법취지임.

□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가 10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고, 편의시설을 갖추었으며,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음.⁴⁾

- 2023년 12월 기준, 총 694개의 표준사업장에서 11,517명의 비장애인과 16,093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음.

-
-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춘 것
 4.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현황 >

(단위: 개소, 명 / '23.12월말 기준)

구분	인증 사업장	비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고용인원
합계	694	11,517	16,093
자회사형 ¹⁾	543	3,624	7,239
일반 ²⁾	150	7,893	5,649

주1): 자회사형은 모회사가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주2): 일반형은 모회사가 없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자료: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하는 개정안에 대해 ①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으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나 활동지원기관과 같이 국가로부터 관리 및 운영지원을 받는 기존 장애인 취업제한 기관과는 그 성격이 다르고, ② 장애인학대 또는 성범죄자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범죄경력조회가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과도한 행정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만, 범죄경력조회는 사업주가 아니라 취업 희망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도 있으며, 근로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부분에 사업자가 부담을 가진다고 소극적으로 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될 수 있다고 보임.

□ 한편,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기 위하여 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포함) 또는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

의 군수 제외)가 설치·위탁한 기관이며(현재 전국 160개소 운영 중),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도지사가 도 내 시·군이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연계 부족으로 인해 시·군 간 운행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설치·위탁한 기관임(현재 전국 8개소 운영 중).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장애인 이용실적은 한 해 동안 약 760만 건을 상회하며, 이동지원센터와 광역이동센터의 근무자는 약 5,600명으로 파악됨.

<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 >

(단위: 서비스 건수/명)

구분	장애인 이용실적	운전자 수	운영인력
서울시	1,347,759	793	68
부산시	252,900	169	39
대구시	337,090	178	38
인천시	248,128	194	34
광주시	485,632	124	16
대전시	139,968	116	23
울산시	159,092	78	25
세종시	36,273	25	9
경기도	1,966,398	1,298	273
강원도	281,548	209	52
충북도	210,407	147	57
충남도	320,539	184	48
전북도	321,773	225	51
전남도	383,022	238	64
경북도	222,299	212	58

경남도	566,898	438	52
제주도	329,095	86	18
합계	7,608,821	4,714	925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2022.12. 기준)

□ 이동지원센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하는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는 ① 성범죄자의 경우, 2025년 시행 예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4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될 수 없는 요건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⁵⁾

② 개정안에 따르면, 직접 장애인과 대면하지 않는 업무 종사자에게까지 취업제한 규정을 두게 되는데, 이와 유사하게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여객운수사업법」에서는 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만을 두고 있다는 점⁶⁾ 등을 이유로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4(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될 수 없다.[시행 2025. 1. 17.] [법률 제20038호, 2024. 1. 16., 일부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6) 「여객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관계부처 및 단체의견

가. 보건복지부(수용)

□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을 확대하여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를 사전 예방하려는 개정 취지에 동의

- 특히, 장애인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최소 10명)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전국적으로 장애인 이용률이 높은 이동지원센터를 취업제한기관에 포함시킴으로서 학대범죄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나. 고용노동부

□ 표준사업장과 기존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차이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의 취업제한기관은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활동지원기관 등으로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운영하거나 자격면허를 받아 종사하며 국가로부터 관리 및 운영지원을 받는 곳임.
- 반면, 표준사업장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표준사업장으로 지

정을 받고 있으나, 이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으로 취업제한 대상 기관과는 그 성격을 달리함.

* 장애인 근로자 다수(상시 근로자 30% 이상)고용, 최저임금 이상 지급, 편의시설 설치

□ 사업장에 과도한 행정 부담 등

- 장애인학대 또는 성범죄자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범죄경력조회가 필수적이거나 이는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 민감정보임.
-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전체 근로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의무를 지는 것은 과도한 행정 부담이며, 침익적 행정행위의 소지가 있음.⁷⁾
- 대부분의 표준사업장이 중소기업임을 감안할 때,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확인된 민감정보에 대한 유출 등 관리문제도 발생 가능

*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분기별 1회 사후관리를 통해 인증조건 유지 여부 및 장애인 근로자 인권침해 발생 여부 확인 중

다. 국토교통부(신중검토)

□ 「교통약자법」 개정(제16조의4, '24.2.20개정, '25.1.17 시행)으로 성·강력 범죄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운전 제한 규정(최대 20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이 마련되었으며, 성범죄 관련해서는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과 중복 규정임.

□ 또한, 개정안의 취지는 특별교통수단에서 장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면하지 않는 종사자(상담직원 등)까지 취업

7) 다만, 개정안은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하면서 일정한 취업제한을 명하여만 하도록 하고 있어 적절한 우려 표시가 아니라고 보임.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 교통수단 취업제한 제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성범죄 등의 경우 택시, 개인택시 운전 자격 제한)를 고려 시 신중검토 필요

문 의 처
02)6788-5502